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7누23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

A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군수

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. 9. 14. 선고 2017구합392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. 17.

판 결 선 고 2018. 1. 31.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가 2017. 3. 10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5,780,360원, 농어촌특별세 276,060원, 지방교육세 414,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로 망 D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된 시점에서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.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망 D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입법 취지 및 그 적용범위

가)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2014. 1. 1. 법률 제12153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, 이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 간 재분할에 따른 증여를 추정함으로써 취득세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[1] 이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[2](2015. 12. 15. 법률 제13557

1) 2013. 12.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성 검토보고서 등 참조
2) 제31조(증여재산의 범위)
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· 등록 · 명의개서 등(이하 "등기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. 다만,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호로 개정되기 전 것)을 참고로 한 것이다.[3)]

나) 한편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).

이와 같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,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"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· 등록 · 명의개서 등(이하 '등기 등'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."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,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'등기 등이 된 후'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).

다)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과 그 입법취지를 같이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역시 "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· 등록 · 명의개서 등(이하 '등기 등'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

3) 주1) 검토보고서 참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조항 역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'등기 등이 된 후'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2) 이 사건의 경우,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. 7. 11. 상속을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, 이는 B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에서 정하는 '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'라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,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, 그 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그럼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손지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판사 김종기

판사 구자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별지

선 정 자 명 단

1. A(선정당사자)

2. G

3. H

4. I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9

관 계 법 령

▣ 지방세법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·등록·명의개서 등(이하 "등기 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20조에 따른 신고·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
2.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
3. 「민법」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

제20조(신고 및 납부)

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▣ 민법

제997조(상속개시의 원인)

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. 끝.